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3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8. 2. 1.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2007년 5월 11일자 「지방자치법」 및 2007년 10월 4일자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우리 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제1조 중 “제38조”를 “제44조”로, “제39조”를 “제45조”로, “제41조를” “제47조”로, 제19조의4”를 “제54조”로, “동법”을 “같은 법”으로 한다.
- 나. 제3조 제1항 중 “제38조”를 “제4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9조의4”를 “제54조”로 한다
- 다. 제4조 제1항 중 “제125조”를 제134조“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”제36조제1항“을 ”제41조 제1항“으로, ”제118조“를 ”제127조”로 한다.
- 라. 제5조 제1항 중 “제39조”를 “제45조”로 한다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8조”를 “제44조”로, “제39조”를 “제45조”로, “제41조를” “제47조”로, “제19조의4”를 “제54조”로, “동법”을 “같은 법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1항 중 “제38조”를 “제4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9조의4”를 “제54조”로 한다.

제4조 제1항 중 “제125조”를 “제13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36조제1항”을 “제41조 제1항”으로, “제118조”를 “제127조”로 한다.

제5조 제1항 중 “제39조”를 “제45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, 제39조,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제44조, 제45조, 제47조 ----- <u>같은 법</u> -----제54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정례회의 회기운영) ①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, 매 회기는 30일 이내에서 개최한다.</p> <p>②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</p> <p>1. (생략) 2. (생략)</p>	<p>제3조(정례회의 회기운영) ①-----제44조----- ----- -----.</p> <p>②- 제54조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정례회의 안건처리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.</p> <p>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.</p>	<p>제4조(정례회의 안건처리) ①----- -----제134조----- ----- -----.</p> <p>②-----제41조 제1항----- -----제127조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) ①의회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최하되 매회기는 15일 이내에서 개최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) ①----- -----제45조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